

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6-4호

성내동 120-85,86번지 광신·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20-85,86번지 광신·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월 7일

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류: 소규모재건축사업

나. 명칭: 성내동 120-85,86번지 광신·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: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20-85,86번지

나. 면적: 2,684㎡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가. 착수 예정일: 미정

나. 준공 예정일: 미정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가. 명칭: 성내동 120-85,86번지 광신·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

나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20-85, B303호

5.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

가. 사업방식 전환: 가로주택정비사업→소규모재건축사업

나. 사업시행계획서 변경

다. 조합 정관 변경

라. 조합원 추가 동의

마. 조합원 변경